

시설아동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김경희(Kyung Hee Kim)¹⁾

강현아(Hyun Ah Kang)²⁾

안소영(So Young An)³⁾

ABSTRACT

Almost 18,000 children were protected in 285 residential facilities all over the country in 2008 in Korea. The recent trends of the residential care include downsizing, and emphasizing independent living programs for aging out youths. Since the 1990s when the active research on the children in residential facilities has begun, the study focus has extended to the issues of developmental status and outcomes of the children, and recently, to the independency of the youths discharged from the facilities. The practical and policy issues are development of therapeutic programs for the children in care, increase of counseling staff, extension of programs for restoring children's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ies, and planning of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discharged youths.

Key Words : Children in residential facilities(시설아동), residential care(시설 보호), aging out(보호만기퇴소).

I. 서 론

요보호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¹⁾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³⁾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So Young 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okpo National Univ, Muangun Jeonnam, Korea

E-mail : ansy@mokpo.ac.kr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중 시설보호란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설아동은 시설보호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 받고 사회화 및 교육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으며, 나아가 직업훈련을 겸하여 받음으로써 자활의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곳에서 양육 받고 있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백숙경, 2009). 시설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으로 규정하는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며 특수 상황에서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에는 시설보호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위탁, 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시설아동이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

만, 시설아동이 해마다 40-5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보호가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방법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ttp : //www.fostercare.or.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현황과 연구쟁점 및 실제적·정책적 이슈를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시설아동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현 황

1. 아동복지시설 유형 및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보호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표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아동 상담소	전용 시설	개인양육 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47	12	257	14	341	5	142	37	3	22	284
서울	46	3,331	33	2,846	2	69	1	77	3	77	5	120	2	142	2	-	9	94
부산	22	2,158	19	2,082	-	-	1	42	1	28	1	6	-	-	4	-	1	18
대구	22	1,021	18	928	-	-	1	35	2	39	1	19	-	-	3	-	-	-
인천	13	661	8	643	-	-	-	-	-	-	2	18	3	-	3	1	-	-
광주	11	809	9	725	-	-	-	-	1	24	1	60	-	-	4	1	-	-
대전	13	647	11	490	-	-	1	142	1	15	-	-	-	-	4	-	1	20
울산	1	118	1	118	-	-	-	-	-	-	-	-	-	-	1	-	-	-
경기	31	2,059	27	1,917	-	-	2	46	-	-	2	96	-	-	6	-	-	-
강원	10	524	9	504	-	-	-	-	-	-	1	20	-	-	5	-	-	-
충북	14	816	12	779	-	-	1	24	1	13	-	-	-	-	-	-	-	-
충남	15	851	14	831	-	-	-	-	1	20	-	-	-	-	1	-	-	-
전북	16	980	14	905	-	-	1	54	1	21	-	-	-	-	2	-	-	-
전남	23	1,446	21	1,398	-	-	1	28	1	20	-	-	-	-	-	-	3	44
경북	16	956	15	954	-	-	-	-	-	-	1	2	-	-	-	-	5	73
경남	27	1,277	26	1,248	-	-	1	29	-	-	-	-	-	-	2	1	2	17
제주	5	338	5	338	-	-	-	-	-	-	-	-	-	-	-	-	1	1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a) 아동복지시설현황 2009.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p1.

<표 2> 연도별 퇴소아동현황

(단위 : 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공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910	120	201	62	26	23	29	6	69	29	9	42	75	89	52	71	7
2005	855	107	177	59	28	25	30	4	69	47	12	42	65	76	39	57	18
2006	825	107	167	52	39	23	12	10	77	39	25	38	59	76	42	47	12
2007	813	109	142	61	38	19	21	8	84	23	37	14	62	102	48	37	8
2008(6월말)	660	74	169	30	30	14	24	7	76	32	5	24	64	64	24	20	3
계	4,063	517	264	264	161	104	116	35	375	170	88	325	325	407	205	232	48

<출처> 신혜령·박은미·강현아(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p.5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의 11개로 구분된다. 2008년 12월 현재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위와 같이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85개이나, 그 수의 대부분은 양육시설이 차지하고 있고 양육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아동복지시설을 적절히 갖추지 못한 지역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법령 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이 잘 분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준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나마 있는 시설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현황

지난 5년 동안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4,063명으로 년 평균 800여명 정도이고, 지역적으로 부산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부산의 시설규모가 커서 퇴소하는 청소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신혜령·박은미·강현아, 2008).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있지만

대학 이하 재학, 직업 훈련시설 등에서 교육 훈련 중인 청소년과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을 요청한 청소년 등은 보호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건강과 인성, 성격, 또래관계(교우관계), 학업성적, 향후진로, 연고자 찾기 및 가정 복귀 등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1997년 시설아동의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 입소, 자연탐방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시설아동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에 있어서는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는 비율이 집단상담 3.9%, 개별상담 3.8%로 낮았다. 따라서 가족해체와 연고자와의 분리 등 정서적, 심리적 위기를 겪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며 치료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퇴소한 아동에 대한 시설의 연계 및 지원으로는 지속적인 상담(77.5%)과 직업알선(73.9%) 서비스를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김통원·김경륜·김성천·박은미·이상균, 2005).

2. 최근 경향

1)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서의 복합 기능 수행

IMF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요보호아동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1만 명 내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미혼모 아동, 기아, 비행이나 가출, 부랑아였으나, 2000년대에는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과 미혼모 아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은 크게 보호시설과 가정보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시설보호가 감소하고 가정보호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변화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가 정책 방향으로 설정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요보호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양육에 치중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 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시설의 소규모화

과거 수용시설의 거대화,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탈 시설화 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규모화된 시설보호에서 결여되기 쉬운 가족 친화적 보호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기능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김희연·김형모·김정숙, 2007). 이와 같은 국민욕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보호의 형태에서 소(小)숙사 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 단위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기존의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그룹홈은 아동 5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 말 현재 정부지원 그룹홈은 176세대로서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며,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3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그룹홈도 그동안 미흡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3)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강화

퇴소아동에게는 취업준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통해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낮아 시설환경개선 및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을 24세에서 25세까지로 확대하고, 최장 5년까지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소 및 연장아동에게는 직업훈련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소하기 전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신혜령 외, 2008).

그리고 시설 퇴소 시에는 침구나 취사도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2006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퇴소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4) 운영자의 자율성 강화

정부에서는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보육에서 전체 아동의 보육까지 보육사의 2교대를 확대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5) 시설 평가지표의 보완 및 표준화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매 평가 시마다 평가수행기관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평가기관에서는 이미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제시되는 평가지표에 맞추어 새로운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매뉴얼의 완성이 요청된다(정무성, 2007).

또한 평가지표에 있어서 현재는 시설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

램 및 서비스의 질,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6개 항목으로써, 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자유권, 참여권 관련 지표들을 개발하여 시설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정민기, 2006).

III 연구쟁점

시설아동에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1960년대에 학술지 논문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다. 1980년대까지의 초기 선행연구들은 시설아동을 위한 생활지도나 기독교 교육 위주로 그 숫자도 10편 이내에 불과하다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설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연구(김현용, 1994; 손의목, 1995; 이배근, 1993; 배태순, 1996)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재정, 직원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황을 근거로 아동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탐색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현실화라든지, 시설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를 위한 방안이나 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시설아동의 발달현황이나 시설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연구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시설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아동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어려움은 시

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겪는 소위 ‘시설 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혜련과 장정순(1998)의 연구는 시설아동들이 집단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설아동은 시설을 통해 물질적 지원은 충분히 받아 큰 불만은 없으나 집단생활로 인한 생활의 부족, 심리정서측면에 있어서 외로움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심리사회발달을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어 부모 및 형제자매나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송순, 1996). 또한 문혁준(2006)은 정서기능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시설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시설아동의 발달특성과 그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졌다. 그 결과, 시설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점(이순형 · 이강이 · 성미영, 2001)이나,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시설의 입소이유는 시설 입소 이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유안진 · 민하영 · 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발달적 특성, 특히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들도 본격화되어 시설아동은 오랜 기간 통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약한 정서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발달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양점도 · 변미희, 2001). 그리고 시설 내에서 제한된 물리적·사회적 경험을 함으로써 건전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나 사회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강복정 · 이정덕, 1999; 국립보건의원, 2002), 자기노출을 꺼리고 방어적이며 폐쇄적인 심리적 특성(유안진 · 한유진 · 최나야,

2001) 혹은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설아동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집중력과 학업성취도에서 떨어지며(김현용, 2002), 학교생활의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성미영 · 이순형 · 이강이, 2001)는 점이 드러났다.

선행연구들(정선옥, 2002; 정영순, 2000)을 통해 시설아동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정선옥, 2002; 정영순, 2000). 많은 아동들이 과거와는 달리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설에 머무르게 되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애착이 줄어들게 되며 오히려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나 적대감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정선옥(2002)의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며, 버림받았다는 고립감과 또래와의 갈등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영순(2000)은 아동의 보호가 장기화되는 요인으로서 시설입소 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법적 행정적 체계,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사례관리 부재, 부모와 사회복지사간의 파트너십 부재, 아동과 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팀접근적 실천과 시스템의 부재,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 서비스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시설보호 서비스 발전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돕고자 하는 선행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인력의 부족, 열악한 처우로 인한 빈번한 이직, 외부자원에 대한 적극적 유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나 행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치료적·전문적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김현용, 1998; 이영환, 2001; 이현주, 1999)은 치료적 전문적 프로그램없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과 최소한의 보호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현주(1999)는 새로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이나 퇴소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가족 등 연고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 직원 및 자원봉사 교육, 시설의 물질적 자원, 생활지도원의 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설에 대한 후원자나 후원조직의 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서 실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선화(1999)는 시설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데에 음악활동 중심의 시설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김춘경과 김기영(2004)은 시설아동에 대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감, 협동성, 주장성 등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김통원 외(2005)의 연구에서도 시설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신체단련프로그램, 종교활동 프로그램, 예능이나 학습교육 프로그램 등 비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자 또한 절반 가까이 직원이 아닌 무급의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우려를 더했다. 미국의 경우 시설보호는 아동이 전문적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아동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시설보호의 경우는 치료적 서비스가 매우 강화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설의 아동 대 전문가의 1 : 0.85에서 1 : 1.4까지 이른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도 시설보호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시설보호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오정수 · 이해원 · 정익중, 2006).

시설의 프로그램의 전문화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 외에도 대규모 형태의 시설을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시설의 대규모화 문제는 과거에도 시설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자주 지적되던 이슈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이미 1930-1950년대에 양육보호시설에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시설로 전환하였고, 시설의 소규모화, 소숙사제화, 더 나아가 탈시설화의 정책을 지향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위탁 우선 배치나 그룹홈의 개발을 통한 탈시설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시설의 보호아동 인원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설의 소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수와 보호아동현황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9년의 경우 전국 시설수가 285개, 보호아동의 수는 17,992명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1개당 평균 보호 아동인원은 약 63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아동시설에는 연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오정수 외, 2006)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수용인원은 아직도 대규모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시설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비교적 초기연구로서는 이태수 · 함철호 · 이용교의 연구(199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허가 소규모아동복지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대규모시설에서 부족한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시설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한 이배근(2000)은 대규모 수용 위주의 시설형태에서 벗어나 그룹홈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만한 그룹홈 모델로서 가정해체 아동을 위한 단기주거형,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부적응 아동들을 위한 장기주거형, 피학대아동 및 가출 아동, 비행아동들을 위한 단기치료형 그룹홈,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장기치료형 그룹홈 등 4가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설의 소규모화와 함께 논의되는 이슈는 시설에 대한 다기능화이다. 최근 정부의 가정보호정책의 강화와 아동 수의 급감으로 인해 아동양육 시설은 기존의 비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수동적 수용시설의 기능 수행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수용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을 갖추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통원 외(2005)는 아동시설종사자들은 새롭게 추가할만한 기능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아동보육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이나 공부방, 단기보호시설 등을 꼽았다. 또한 기존의 생활시설기능에 이용시설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정폭력·아동학대·위기개입을 위한 일시보호, 가족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취약계층 중점 보육서비스로 그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이용시설기능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문적 치료기능을 갖춘 치료 시설로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최근 아동을 위한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최근 들어서는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설퇴소청소년들의 자립 문제가 중요한 연구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시설아동의 자립에

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신희령·김성경·안혜영(2003)의 연구는 양육시설 퇴소한 청소년이나 자립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자립생활기술과 그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퇴소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하위 요소는 시설지지로 나타났다. 퇴소청소년들은 가족지지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들의 소원한 가족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집단별 자립생활준비 정도를 취업중인 청소년, 취업준비 중인 청소년, 대학생 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박은선(2004)의 연구는 자립생활 준비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활과업 수행 기술면에서 특히 취업준비 중인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기술을 나타내었다.

퇴소청소년들의 취업률을 조사한(이용환, 2003)의 연구에서는 2000-2003년 동안 퇴소청소년들의 취업률이 평균 86.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약 21%는 서비스업, 17%는 영세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직종에 주로 종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퇴소청소년이 시설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퇴소 이후 실제 취업직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퇴소청소년의 자립증진을 위해서는 퇴소청소년들의 욕구와 소질에 맞춘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과 기업체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이혜은·최재성, 2008)에서는 퇴소청소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자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성격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원지영(2008)의 연구는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통계와 정책을 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분석한 결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후 관리와 사회적 지지망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시설아동 관련연구의 쟁점은 시설아동에 대한 퇴소 준비 및 자립준비, 퇴소 이후의 자립실태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퇴소한 이후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대상자만을 포함한 한계점을 보인다. 또한 퇴소 이후 복지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임금, 주거실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교육, 이성관계 등 주요 타인과의 인간관계형성의 양상이라든지, 범죄나 비행에 대한 연루, 폭력피해 경험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쟁점은 시설보호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며, 어떤 요보호아동이 시설에 배치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이전에는 시설보호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서비스로서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다른 형태의 보호서비스(예 : 가정위탁보호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서비스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아동 배치 원칙과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전문적 배치가 이루어기 위해서는 아동시설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연구쟁점은 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아동의 시설적응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아동의 친가족을 포함한 사례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V. 실제적, 정책적 이슈

본 장에서는 시설아동의 실제적,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양육시설은 양육기능과 치료기능을 담당할 인력이 모두 부족해서 입소이전에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초기에 시설은 아동을 위해 개별화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시설아동의 집단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더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 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양육시설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들이 주 구성원이다. 입소아동들은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학대에 의해 격리되면서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에서의 장기적인 집단생활로 인하여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는 소극적 태도와 위축감을 갖게 한다. 또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퇴소후의 자립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시설은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지도원과 상담인력을 법정기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기준도 생활복지사와 임상심리상담원을 아동 50인당 각각 1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시설을 지향하는 시설은 상담인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며 간호사, 영양사, 위생원 등의 직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설아동들의 심리적 문제와 사

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가 시설아동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또래학대, 비행, 가출, 약물등의 특수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쟁점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아동들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소의 자립전환을 통해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제한된 경험적 정보만을 가지고 의존에서 점차적인 독립 즉,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보호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로 자립, 즉 자기충족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자립전환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환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거주지 알선, 직업구하기, 직장유지, 건강보호의 접근성, 예산 및 돈 관리 등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신혜령 외, 2008).

한편, 이혜연·서정아·조홍식과 정익중(2007)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아동의 부모생존율이 75-85% 이상으로 서류상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와 연락이 되고 있는 아동들을 제외하고 부모와 거의 만나지 않는 경우의 아동이 3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지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설에 입소되어 있다하여도 부모와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생활과정동안 그리고 퇴소직전과 퇴소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족과 연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신혜령 외(2008)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아동의 희망퇴소연령은 20-23세가 68%로 높게 나타나서 현재의 18세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학업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가족과 재결합한 청소년들에게서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형태가 일정치 않음으로 해서 노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점차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퇴소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실제적, 정책적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아동의 문제를 감소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시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대학에 의뢰하여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또는 대학생과의 멘토, 멘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시설아동 50인당 1인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25인당 1인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대 25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아동과 원가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의무화하도록 한다. 부모생존이 불확실한 아동은 일반가정의 부모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가정에 3,4명의 아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넷째,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 체험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획득하도록 자조집단을 결성한다. 이를 위해 자립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통이나 등록금 등의 할인혜택과 의료보험혜택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집단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복정 · 이정덕(1999).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5-26.

국립보건원(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부.

김춘경 · 김기영(2004). 시설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놀이치료연구*, 8(1), 19-35.

김통원 · 김경륜 · 김성천 · 박은미 · 이상균(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김현용(1994).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2, 61-86.

김현용(1998). 아동복지시설 부문의 개정방향. *한국아동복지학*, 7, 95-125.

김현용(2002). 보호시설아동과 아동복지법. 허남순 · 문선화 · 정영순 · 김현용 · 김미혜 · 이배근 · 조홍식 · 황성철 · 김재엽 공저(pp.151-188). *한국아동복지학*. 서울 : 소화.

김희연 · 김형모 · 김정숙(2007). 아동복지시설 기능다각화 모델 구축 연구. 경기 : 개발 연구원.

노혜련 · 장정순(1998).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65-92.

문혁준(2006). 시설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

정학회지, 44(10), 1-8.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

보건복지가족부(2009a). *아동복지시설현황 2009*.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9b). *아동 · 청소년백서 2008*.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배태순(1996).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아동복지 영육아시설 운영의 내실화 방안. *아동복지학*, 4, 109-134.

백숙경(2009).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미영 · 이순형 · 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학교적응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손의목(1995). 아동수용보호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 63-83.

송 순(1996). 사회적지원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육아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91-108.

신혜령 · 김성경 · 안혜영(2003). 시설 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신혜령 · 박은미 · 강현아(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양점도 · 변미희(2001). 아동복지시설의 양육환경이 아동 ·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3(2), 13-24.

오정수 · 이혜원 · 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서울 : 나눔의 집.

원지영(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1).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시설 청소년의 자아 및 환경 지각. *한국아동복지학*, 12, 42-76.
- 이배근(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복지학*, 1, 46-57.
- 이배근(2000).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모형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9, 289-312.
- 이선화(1999). 시설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중심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 8(1), 131-142.
- 이순형·이강이·성미영(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 이영환(200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2), 5-24.
- 이용환(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 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5, 115-136.
- 이선화(1999). 시설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중심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 8(1), 131-142.
- 이태수·함철호·이용규(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5, 169-206.
- 이현주(1999). 아동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아동복지학*, 8, 59-78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은·최재성(200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2), 209-233.
- 원지영(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정무성(2007). *사회복지시설평가 2007*. 서울 : 숭실대학교.
-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영순(2000).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촉구방안. *한국아동복지학*, 9, 247-262.
- 참고사이트
[http : //www.fostercare.or.kr](http://www.fostercare.or.kr)

2009년 8월 24일 투고, 2009년 11월 4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